

축구 경기로 빗대어 본 한미FTA 독소조항 12가지

한미FTA는 1%의 이익을 위해 99%를 희생시킵니다.
더욱이 한미 양국간 너무나 불공정하기 까지 합니다.
이런 '룰'로는 결코 경기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.

독소조항4. 투자자-국가제소권(ISD)

"미국 선수가 드리블하다 혼자 넘어져도 페널티 킥을 준다."

한국에 투자한 미국 자본이나 기업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민간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. 투자 자본이나 기업이 피해를 보았다는 판결이 나면, 한국정부가 현금으로 배상해야 한다.(대부분의 경우 한국보다 힘센 미국의 투기 자본 및 초국적기업이 승리함.) 한마디로 초국적 투기 자본이나 기업이 자신의 이윤 확대를 위하여 상대국가의 법과 제도를 무력화 시키는 독소조항이다.

(예)

- 한국에 투자한 미국 자본이나 기업은 국내에서 재판받을 필요가 없음.
- 오스트리아 등 미국과 FTA를 추진하거나 맺은 국가들 대부분은 이 독소 조항을 채택하지 않았음.
- 한국과 유럽의 FTA에 협상에서는 이 독소 조항을 논의조차하지 않음.
- 한국 정부는 부동산 정책 등을 포함한 공공정책을 사실상 포기하게 됨.
- 대한민국이라는 주권 국가의 사법권, 평등권, 사회권이 무너짐.

